

-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-
2027~2028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공고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2035 대전광역시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」에 따라 2027~2028년도 정비물량을 2027년 일괄 선정하고, 연도별 정비물량에 맞춰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3일
대전광역시장

1. 개요

- 가. 공 고 명: 2027~2028년도 특별정비구역 선정 및 지정 계획 공고
- 나. 제 안 자: 둔산지구 및 송촌지구(중리·법동 포함)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
대전광역시의 구성 승인을 받은 주민대표단
- 다. 제안요건: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확보
- 라. 선정물량

지구	2027년도	2028년도	비고
둔산	4,000호	4,000호	
송촌(중리법동 포함)	1,500호	1,500호	

※ 선정된 구역의 세대수가 4,000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물량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음

마. 선정방법: 정성평가

바. 추진절차(안) / 추진일정은 절차의 진행상황 및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1) 물량 선정(특별정비구역 선정)

공모 공고	제안서 접수	1단계 법적기준 내부평가	2단계 평가위원회 정성평가	일괄 선정 (2개년도분)
'26. 10.	'27. 3. 22.~3. 26.	'27. 4.~5.	'27. 6.	'27. 상반기

- ※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세부기준은 12월 말 안내 예정
- ※ 연차별 정비 물량이 별도로 설정되어, 특정지구의 물량을 다른 지구의 물량으로 변경 불가

2) 특별정비구역 지정

정비물량	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	의회 의견청취	도시계획위원회 심의	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
'27년도분	'27. 7.	'27. 9.	'27. 10.	'27. 10.
'28년도분	'27. 10.	'27. 12.	'28. 2.	'28. 3.

2. 접수방법

- 가. 접수기간: 2027. 3. 22.(월) 09:00부터 3. 26.(금) 18:00까지
- 나. 접수처: 대전광역시 민원상담실(시청 2층)
- 다. 제출방법: 제출서류를 갖추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
- 라. 제출서류

- 1)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1부. 【서식1】
- 2)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【서식2】
- 3)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동의서 각 1부. 【서식3】
- 4)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. 【서식4】
- 5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. 【서식5】
- 6) 특별정비계획 수립내용(특별정비계획서,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) 각 5부.
※ 「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-442호)」 제5조 및 조례 제4조
- 7) 1)~6) 자료가 담긴 USB 1개.
※ 작성 원본파일[한글(hwp, hwp), 엑셀(xls, xls)] 및 PDF(용량 압축) 파일 제출

3. 작성기준

- 가.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」,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통합 정비 가이드라인(국토교통부), 「2035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」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
- 나.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【서식6】의 동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접수기간 내 접수된 철회서만 인정

4. 유의 및 안내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나. 물량 선정(특별정비구역 선정)과 관련된 일체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다. 토지등소유자의 충족기준은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라.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(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)를 따릅니다.
- ※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마.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인정기준은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와 제21조의5를 충족해야 합니다.
- 바. 검토 기준은 접수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, 공고 기간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사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구역 지정된 이후 발견 시에도 지정 취소 또는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- 아.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」 등 법적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특별정비계획서가 제출되거나, 붙임 서류 및 전자 파일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체 서류를 반려합니다.

5. 문의처

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(☎ 042-270-6261~626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【서식1】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1부.
2. 【서식2】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(안) 1부.
3. 【서식3】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서 1부.
4. 【서식4】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.
5. 【서식5】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안) 1부.
6. 【서식6】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철회서 1부. 끝.

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제안자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
(전화번호:)			

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개요	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의 명칭	
	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유형	※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.
	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종류 (근거 법령)	
	위치	
	면적	m ²

구역 내 토지 현황							
번호	행정구역	지번	지목	면적(㎡)	등기상 대지 지분	소유자명	비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
구역 내 건축물 현황								
번호	행정구역	지번	종류	동·호수	연면적(㎡)	등기상 건축물 지분	소유자명	비고
1			아파트					
2			단독주택					
3			단독주택					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·제26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.

년 월 일

제안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(뒤쪽)

첨부서류

1.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

가. 토지이용,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

나.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

다.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).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(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,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)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2.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경우

가. 토지이용,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

나.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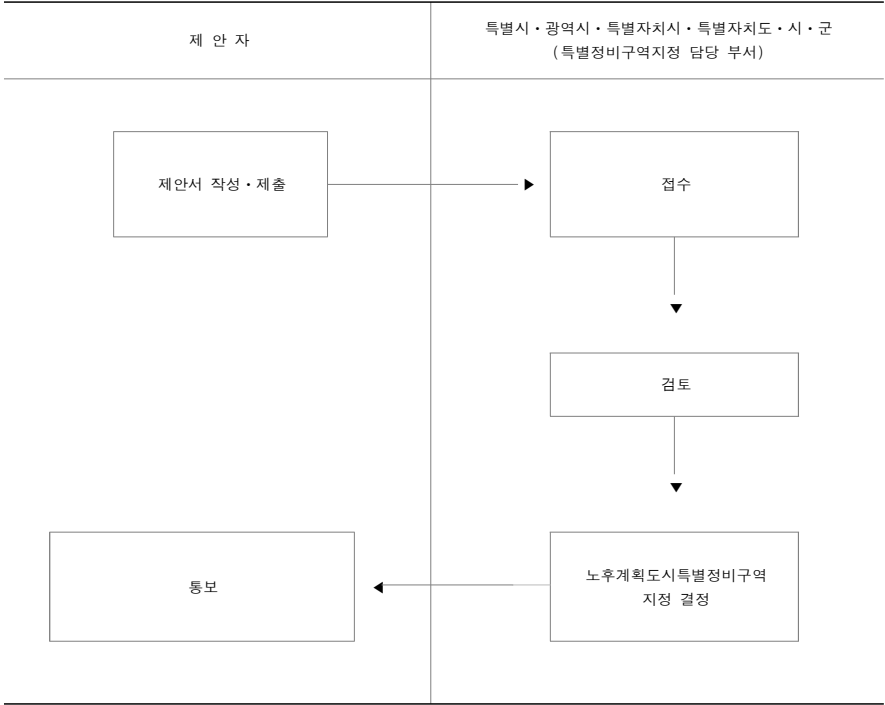
다.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

라.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).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(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,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)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유의사항

작성 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印(間印, 사잇도장)을 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(안)

토지등 소유자 연번		대표 소유자	토지등소유자			소재지					관리내역				동의여부			비고
연번	공유		성명	생년월일	소유자 주소	도로명 주소	아파트 명칭	동	호	토지		건축물		실물 동일시	LX	차량 통행		
										필지 면적	소유 면적	공유 여부	동수				허가 유무	

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6. 8. 4.>

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

동의자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	
	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 <div>(전화번호:)</div>			
소유권 현 황	토 지 (총 필지)	소재지	공유 여부	면적(㎡)
	건 축 물 (종류: 상가, 아파트 등)	소재지	허가 유무	동 수
	지 상 권 (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 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 를 말합니다)	설 정 토 지		지상권의 내용
동의 내용	등기상 건축물 지분 (면적 ㎡)		등기상 대지 지분 (면적 ㎡)	
	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			
	위치			
	면적	㎡		
※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,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·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.				

본인은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·제18조의4제1항제1호·제26조의2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·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(지장날인)

[] OO 예비사업시행자

[]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첨부서류	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(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,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) 사본 1부. 다만,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)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.
------	---

유의사항

○ 소유권 현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, 사잇도장)을 해야 합니다.

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	
대표자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	
	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소유권 현 황	토 지 (총필지)	소재지	공유 여부		면적(㎡)
	건 축 물 (종류: 상가, 아파트 등)	소재지	허가 유무		동 수
	지 상 권 (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 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 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)	설 정 토 지		지상권의 내용	
등기상 건축물 지분 (면적 ㎡)		등기상 대지 지분 (면적 ㎡)			
소유물건	연번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	지장날인
대표소유자 (선임수락자)	-	자필 서명			
위임자 (동의자)	1	자필 서명			
	2				
	3				
	4				
	5				

※ 성명은 반드시 자필(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)로 작성해야 합니다.

상기 물건의 공동소유자(위임자)는 지정 제안 신청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위와 같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대전광역시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안)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선정 및 지정 주민 제안과 관련하여,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>를 받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(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)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: 대전광역시
- 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-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특별정비구역 선정 및 지정 주민 제안 동의 관련
- 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주민제안 완료 후 3년까지
-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
 -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주민대표단 승인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,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예)

성 명 : 자필 서명 (서명 또는 인)

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철회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
동의자	성명(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동의 철회의 내용	(동의자가 자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)	

본인은 이전에 동의했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를 철회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 철회자 ※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(지장날인)

주민대표단 구성 추진위원회	성명(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
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
	전화번호	

〇〇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위원회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동의 철회자 소유권 현황	토지 (총 필지)	소재지	공유 여부	면적(㎡)	
	건축물 (종류: 상가, 아파트 등)	소재지	허가 유무	동 수	
		지상권 (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)	설정 토지	지상권의 내용	
		등기상 건축물 지분 (면적 ㎡)		등기상 대지 지분 (면적 ㎡)	
	첨부 서류	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, 다만,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)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.			
	유의사항				
1. 동의 철회자 소유 토지(건축물)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, 지장으로 간인(簡印)을 해야 합니다. 2. 이 동의 철회서는 공고에서 정한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.					